새정치민주연합 - 시민사회 공동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

2014. 9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좋은예산센터

목 차

01 **정부의 세법개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발표**

신승근 기획재정 전문위원, **이한규** 예산결산 전문위원 ·····(별첨)

02 **발 제1.**

정부의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증세안에 대한 의견

김유찬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1

03 **발 제2.**

2014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평가

강병구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15

04 **지정토론**

김태일 교수 (좋은예산센터 소장) ····· 45

05 **자유토론**

기재위 위원, 예결특위 위원 자유 토론 ····· 51

새정치민주연합 - 시민사회 공동

재정파탄 · 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

❒ 목 적

담뱃세 및 주민세 인상 등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민복지 및 국가 재정건전성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와 예산을 모색함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좋은예산센터

❒ 일시 및 장소

2014년 9월 24일 14: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회 순

1. **정부의 세법개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발표**

- 신승근 기획재정 전문위원, 이한규 예산결산 전문위원

- 발 제 1. 김유찬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의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증세안에 대한 의견**
- 발 제 2. 강병구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2014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평가**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 (좋은예산센터 소장)
- 자유토론 : 기재위 위원, 예결특위 위원 자유 토론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회 순

구분	소 요 시 간	분	내 용	비 고
순서	14:00~14:05	5	안내 말씀, 장내 정리	사회자
	14:05~14:10	5	국민의례	일동
	14:10~14:15	5	축 사	-
	14:15~14:20	5	인사말씀	윤호중 의원
	14:20~14:25	5	인사말씀	이춘석 의원
	14:25~14:30	5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발표	신승근 전문위원
	14:30~14:35	5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발표	이한규 전문위원
	14:35~14:50	15	발제 1.	김유찬 교수
	14:50~15:05	15	발제 2.	강병구 교수
	15:05~15:25	10	지정토론	김태일 교수
	15:25~15:55	30	자유토론	일동
	15:55~16:00	5	정 리	
	이후		폐 회	

발제1.

새정치민주연합 – 시민사회 공동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

정부의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증세안에 대한 의견

김유찬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

정부의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증세안에 대한 의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김유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재정세제위원
2014년 9월 19일

1. 서론

- 담배소비세, 지방세(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그리고 이를 그 이전에 발표한 배당에 대한 세율인하와 함께 보면 모두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이고 소득하위 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처.
o 다수결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음.

- 개별 사안 마다 정부가 제공하는 증세 혹은 감세의 명분은 매우 작위적이고 선택적.
o 담배소비세 인상에서는 국민건강을 보호[1]한다면서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o 소득세/법인세 분야의 증세에 대하여만 부정적 경기효과를 이유로 반대.

- 주민세의 경우 지방소득세로 변화된 (과거의 주민세 소득할) 부분은 건드리

1) 담배소매가격이 왜 하필 4,500원으로 설정되도록 정부는 담배관련 세부담을 조정하려하느냐, 왜 4000원이나 혹은 5000원이 아니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부의 의도는 사실 국민의 건강보호 보다 세수의 확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남. 2014년 6월의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최성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에 따르면 담배가격이 4500원 근처에 설정되는 경우 세수가 극대화 된다는 것. 가격이 그 이상이 되면 수요감소로 오히려 세수는 감소.

지 않고 주민세 균등할 부분만 인상.
o 이는 인두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거 영국에서 대처정부가 인두세의 도입을 시도하다가 거센 정치적 실패를 경험한바 있음.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을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소득최상위계층에게 주로 돌아가는 배당에 대한 세율인하를 제안
o 이러한 역재분배 정책이야 말로 경기에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것
o 분배구조의 악화가 경기에 좋지 않다는 상황판단에 입각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배당세율인하는 논리적 모순.

2, 정부(안)의 주요 내용과 증세의 명분

1) 담배소비세

- 정부는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
* 정부의 판단기준인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 43.7% --> 과장된 수치: 생활에서 느끼는 주변의 흡연인구비율과는 거리감이 있음.

-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함.
*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 비율 확대 : 14.2% → 18.7%

-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금연종합대책의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함

* 2004년 당시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 2004년 57.8% → 2005년 50.3% → 2006년 45.9%

o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목표

2)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 주민세는 현재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o 2015년의 경우, 주민세 증가액을 평균 2,380원으로 예상하며 이는 1999년 이후 15년간 고정되어 있던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2014년 평균 4,620원

** 징세비용(2,000원), 물가상승률('92년 대비 105%), GDP(382%) 자장면(6,000원), 커피(4,500원), 목욕비(6,000원)

- 주민세 법인분은 자본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그 법인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자본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4개년(2015~2018년)에 걸쳐 최대 528만원(자본금 10조원 초과, 종업원 3,000명 초과)까지 단계적으로 그 과세를 늘릴 예정.

- 자동차세의 인상은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되며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 451만대)에 대해서만 적용.

* 2012.3.15. 세율이 개정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403.4만대) 및 소형 승합자동차(15인 이하 64.4만대) 등 총 1,467.8만대(76.5%)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

- 인상대상이 되는 택시(2,000CC)의 경우, 연간 3만 8천원 부담하던 것을 3년에 걸쳐 7만 6천원으로 조정.

-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 포함.

3. 정부의 증세(안)이 야기하게 될 실제적인 효과

1) 담배소비세 증세

- 국민건강증진 효과: 금연효과가 발생해야 비로소 건강증진효과 발생.
o 담배세 인상으로 의미있는 금연효과가 발생할 것인가는 판단하기 어려움.
o 지금까지의 담배세 인상에서는 모두 실패함.
o 기존의 장기적인 트렌드로서 흡연율 감소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담배소비세 인상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o 그러나 이번의 담배소비세 인상안의 인상액이 과거와 달리 매우 큰 폭이라는 점에서 금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음.

-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하게 부정적.
o 2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저소득층을 대거 포함한 국민들(흡연자)에게 지워지면 그만큼의 내수 구매력 감소.
o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소비지출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의 증가보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더 큼.

- 분배구조악화: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살펴보면 소득하위계층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높고 결과적으로 소득계층별 담배소비세 부담비율은 매우 역진적이 됨.

<표: 소득수준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1998-2013>

소득수준	'98	'01	'05	'07	'08	'09	'10	'11	'12	'13
하	69.1	66.7	57.7	50.9	55.3	51.2	54.2	53.9	48.2	47.5
중하	67.2	62.9	52.3	45.2	49.6	50.9	48.3	46.6	45.4	43.1
중상	66.2	59.1	51.2	44.9	46.4	46.4	45.8	44.9	38.6	41.3
상	63.4	54.2	45.2	38.9	39.9	38.7	43.5	44.1	40.8	36.6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자료

- 조세형평성의 문제[2]: 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흡연자의 1년간의 세부담은

약 120만원 정도로 시가 9억원 아파트(기준시가로는 6.8억 정도) 소유자의 1년간 재산세액.
o 그리고 소주 2,300병 정도 마시는 경우의 술에 대한 세부담과 동일함.
o 또한 평균적으로 연봉 4,500-5,000만원 정도의 근로자의 소득세 규모.

2) 주민세

- 주민세(균등할)는 인두세에 해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부과하여 가족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함.
o 서민에 대한 조세로서 소득역진적 성격.
o 세율수준이나 세수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우 극단적인 조처.

- 담배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좋지 않고 소득분배에 역진적으로 작용하며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 징세비용: 정부 스스로의 발표에 따르면 1인당 2000원의 징세비용이 발생하여 주민세(균등할)의 경우 징수하는 세수의 큰 부분이 징세비용으로 소진됨.
o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인당 평균세수 4,620원, 2015년 주민세 증가액 평균 2,380원으로 예상하므로 2015년 1인당 세수규모는 7000원으로 예상됨.
o 7000원 중에서 2000원이 징세비용으로 사용되므로 30% 정도가 징세비용에 해당됨.

- 1인당 2,380원이 증가되므로 2014년 4월 기준 전인구수 51백만을 곱하면 1,213억 정도가 추가세수가 예상됨.
o 증가된 주민세(소득세 균등할분)의 세수입은 2015년에 3천 600억 정도가 예상됨.

- 주민세(소득세 균등할 분)를 폐지하고 이를 통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현재 소득세납부액의 10%로 규정된 지방소득세율을 11%로 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2) 한계레신문, 2014. 9. 19.

징세비가 절감됨.
o 소득분배의 역진성문제, 조세형평성의 문제도 해결되며 경기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부분적으로 완화됨.
o 지방소득세율의 11%로의 조정은 4천 6백억 정도의 세수입증가를 가져와서 주민세(소득세 균등할분)을 폐지하여도 그 이상의 세수입을 가져옴.
* 이는 주민세(법인세분, 재산세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주민세(법인세분)의 경우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긍정적인 징세비용절감효과 등이 발생함.

- 이는 조세제도의 간편화에도 기여하는 것.

3) 자동차세

- 영업용 택시 운송업의 경우 만성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택시기사들도 소득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추가적 세부담 부여는 부적절.

4. 함께 고려할 사항

1) 외부불경제

- 담배라는 재화에 대한 중과세의 논리적 근거는 담배가 부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유발하는 품목이라는 것.

-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품목과 부정적 가치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담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재화는 다양하며 때문에 담배에 대하여 중과세 한다면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술, 사행산업(로토,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각종 게임 산업), 자동차/유류, 전력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도 중과세 하여야 함

-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추정은 다양하나 대체로 4.9조에서 5.9조 정도로 추정.[3)]

o 술의 경우 이 피해에 대한 추정규모는 훨씬 커서 약 18.6조 정도로 추정.[4)]

-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 약 5조 5천억에 비하여 담배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기타 부담금으로 약 7조 정도를 흡연자들이 공공분야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어서 담배세는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

- 이에 비하여 주세 수입은 2013년 기준 2조 9천억 정도로 집계. 교육세/부가세를 합하여 총 주류소비로 인한 세수입은 4조 4천억 정도임.

- 담배라는 품목의 사회적 비용과 과세액을 술이라는 품목의 사회적 비용과 과세액과 비교해볼 때 정부는 당연히 술에 대하여 과세하자는 주장을 해야.

* 담배: 7조 / 5조 5천억 = 약 127 %

** 술: 4조 4천억 / 18조 6천억 = 약 24 %

o 담배소비자는 사회에 유발한 피해규모에 비하여 세금을 127%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음주자들은 단지 24 %만을 부담하고 있음.

- 음주자는 흡연자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훨씬 넓은 분포: 조세저항의 강도가 높으며 과세의 어려움이 예상됨.

o 그래서 과세하기 어렵다면 주세보다 과세의 명분이 훨씬 약한 담배세도 같이 재원조달방안에서 제외하여야 함.

-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표는 2009년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약 78조원으로 GDP 대비 약 7.3%에 달한다고 하

3) 이은경,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가격정책의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12.
4) 정영호, 음주의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격정책의 필요성, 『보건복지포럼』 1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였고 그 심각성을 상기.

o 사행산업의 거래액 혹은 매출액은 공식적으로 20조 정도로 추계되나 비공식/불법적인 거래를 포함하면 이를 훨씬 상회함.

o 이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수입은 2013년 국세와 지방세 합계 약 2.3조 정도로 추정되고 약 3조 정도의 기금수입이 있는 것으로 집계.[5)]

- 정책대안: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행산업을 금지시키느냐 금지가 불가능하니 이 상태로 두느냐의 판단의 문제이며 세수입 측면에서의 조세정책적인 판단의 여지는 별로 없음.

- 교통사고비용, 교통혼잡비용, 대기오염비용을 합산하면 자동차 및 관련 유류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회적 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70조 이상으로 집계.[6)]

o 세수입은 약 40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절반정도의 수준.[7)]

- 자동차와 유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보편적 증세에 해당하여 주세보다 국민적 저항도 강력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훨씬 규모가 큼.

- 담배에 비하여 술이나 자동차/유류, 에너지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 사회의 광범위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

5) 2014년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간한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총매출액 196,726억원, 이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수입은 2013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2,866억원이며 30,916억원 기금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6)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도로교통사고로 23조 5천 9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30조 3,150억 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함. 자동차 및 관련 유류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총사회적 비용 70조 추정은 교통사고비용과 혼잡비용에 대기오염비용 및 기타 비용을 추가한 것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추정임. 2004년도의 대기오염비용은 이미 15.5조 정도로 추정됨(강만옥 외, 에너지부분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7) 자동차산업협회 사이트에 나오는 통계는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09년의 것으로 자동차관련 총세수는 32조 1천 7백억 원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이는 2009년 국가총세수의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15.8% 수치를 2012년 국세(203조원)와 지방세(53조 9,381억원)의 총액인 256조 9,381억원에 대입할 경우 약 40.5조원이 2012년 자동차 관련세수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일단 피하려고 하는 정책의 범주인 보편적 증세에 해당함.

o 그렇다고 해서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상쇄라는 논리(혹은 부정적인 가치재 논리)에 바탕을 둔 세금을 비중이 작은 범주의 사람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과세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흡연자의 자기결정권

- 정부는 국민(흡연자)의 건강에 대하여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접근.
o 그러나 국민의 일부인 흡연자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교육지도자로서의 정부는 피교육생들의 담배소비와 관련한 경제적 선택의 사회심리적 맥락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담배가 야기하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담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님.
o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담배소비에 지출되는 액수는 큰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돈을 쓰면서 담배소비에 의존
o 흡연자들은 스스로의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신체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그 것은 그들이 잘 알고서 하는 선택이라는 점이 중요.
o 고율의 담배소비세는 흡연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담배와 술은 돈과 시간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에게 있어서 생활의 시름과 고통을 달래주는 거의 대체될 수 없는 위안품.
o 이들에게 다른 대체물이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함.
o 정부가 이러한 처지의 서민들을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 건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민들에게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높은 담배소비세의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이 담배를 줄이면 건강의 불평등성이 해소되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허울만 좋을 뿐.

o 담배가 서민층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심리적 위안품이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담배소비의 탄력성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큼.
o 결과적으로 높은 담배가격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담배소비는 줄지 않고 세부담만 늘려줌.

-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의 담배가격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서 높은 담배소비를 방치한다는 지적은 별 의미가 없음.
o 우리는 우리의 맥락에서 출발해서 올바른 조세정책을 정립해야 함.
o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의 서민들은 담배를 대체할 다른 위안거리가 있으며 우리와 다름.

3) 지방재정의 문제

- 담배소비세는 본래 지방세이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담배소비세 인상등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

- 정부의 담배소비세 등의 2000원 인상안을 보면, 담배소비세(641원->1007원), 지방교육세(321원->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841원), 부가가치세(234원->433원) 등이 오르게됨.
o 여기에 물가와 연동되는 개별소비세(594원)도 새롭게 추가됨.

- 이들 중 지방재정에 귀속되는 것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나머지 건강증진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은 국세에 해당

- 결과적으로 담뱃값 중에 국가재원 배분 비율이 38.0%에서 56.3% 높아지고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지게 됨.[8)]

8) 서울시 보도자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2014.9.16.

- 지방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한 일방적 조처로 지방정부 세수입의 중요한 요소인 취득세 세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이미 더욱 가중된 상황.

-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담배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에 추가하여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치 않음.

5. 결론

1) 담배소비세 증세

- 담배소비세율인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효과는 회의적.

- 담배소비세율인상의 부정적 경기효과는 확실함. 2조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지워지면 그만큼의 내수 구매력 감소.

- 조세형평성의 문제: 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흡연자의 1년간의 담배세 세부담은 시가 9억원 아파트 소유자의 1년간 재산세액.

- 담배소비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존립근거가 있으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 약 5조 5천억에 비하여 담배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기타 부담금으로 약 7조 정도를 흡연자들이 공공분야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어서 담배세는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

- 담배라는 품목의 사회적 비용과 과세액을 술이라는 품목의 사회적 비용과 과세액과 비교해볼 때 정부는 당연히 술에 대하여 과세하자는 주장을 해야.

- 담배소비자는 사회에 유발한 피해규모에 비하여 세금을 127%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음주자들은 단지 24 %만을 부담하고 있음.

2) 주민세

- 주민세(균등할)는 인두세에 해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부과하여 가족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서민에 대한 조세로서 소득역진적 성격.

- 담배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좋지 않고 소득분배에 역진적으로 작용하며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 2015년 주민세 1인당 세수규모는 7000원으로 예상되며 7000원 중에서 2000원이 징세비용으로 사용되므로 30% 정도가 징세비용에 해당됨.

- 주민세(소득세 균등할 분)를 폐지하고 이를 통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현재 소득세납부액의 10%로 규정된 지방소득세율을 11%로 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징세비가 절감되고 소득분배의 역진성문제, 조세형평성의 문제도 해결되며 경기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부분적으로 완화됨.

- 이는 조세제도의 간편화에도 기여하는 것.

3) 자동차세

- 영업용 택시 운송업의 경우 만성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택시기사들도 소득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추가적 세부담 부여는 부적절.

4) 증세의 필요성과 상대적 순위

- 복지재정의 요구에 따라 재원이 필요할 경우 우선 비과세되고 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다음 순위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확대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에 부합하며 국민경제의 더 빠른 성장을 위한 길.

발제2.

새정치민주연합 – 시민사회 공동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

2014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평가

강병구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2014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평가

강병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1.「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주요 내용

□ 재정운용 기본방향

o 축소균형 위험에서 확대균형으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운용

o '지출확대 → 내수회복 → 세수증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기반 마련

□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o (총수입)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 전망

o (총지출)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4.5% 증가

o (관리재정수지) 2015년 악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o (국가채무) GDP 대비 30% 중반에서 관리

<표 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관리재정수지	Δ25.5	Δ33.6	Δ30.9	Δ24.0	Δ18.1
통합재정수지	13.5	6.8	11.0	19.7	26.8
국가채무(A)	527.0 (35.1)	570.1 (35.7)	615.5 (36.4)	659.4 (36.7)	691.6 (36.3)
공공기관 부채(B)	511 (34.0)	524 (32.8)	526 (31.1)	517 (28.8)	513 (26.9)
합계(A+B)	1,038 (69.1)	1,094.1 (68.5)	1,141.5 (67.5)	1,176.4 (65.5)	1,204.6 (63.2)

주: GDP는 2010년 신계열 기준이며,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9.

기획재정부,『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4.9.

□ 재정여건의 변화

o 중장기 경상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2015년 이후 6.6% → 6.1%

o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015년 하락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o 의무지출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재량지출 비중은 감소

<표 2>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세부담률	18.7(20.2)	17.9	18.0	17.5	17.7	17.7	17.9
국민부담률	24.8(26.8)	24.3	24.8	23.9	24.0	24.1	24.2

<표 3> 재정지출·의무지출·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가율
재정지출	355.8	376.0	393.6	408.4	424.0	4.5
의무지출	167.2 (47.0)	174.0 (46.3)	192.2 (48.8)	205.1 (50.2)	219.6 (51.8)	7.1
재량지출	188.6	202.0	201.4	203.3	204.3	2.0

□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o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Pay-go 원칙 등 재정준칙 도입

o 3대 재정개혁 방향 제시: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BTL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o 성과관리 강화 및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 적극 반영

o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 파생금융상품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

o 공공부문 부채·재정 위험 관리 강화

-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관리

o SOC분야의 예타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

- 총사업비(국고) 500억원 이상(300억원) → 1,000억원 이상(500억원)

o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2.「2015년 예산안」 주요 내용

□ 기본방향

o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 재정운용

o 경제의 당면과제 해소를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o 재정개혁을 통한 국민신뢰·재정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

-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정보 공개, 예산외 자금 흡수, 민간투자 활성화 등

□ 2015년 예산안 주요 내용

o 「'13~'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세수는 감소하고 세출은 크게 증가

- 당초 '14년 대비 '15년 23조원 세입 증가에서 13조원 증가로 하향 조정

- 당초 '14년 대비 '15년 12조원 세출 증가에서 20조원 증가로 상향 조정

<표 4> 2015년 재정운용 (단위: 조원, %)

구분	2014년	2015년
총수입	369.3	382.7 (3.6%증)
총지출	355.8	376.0 (5.7%증)
관리재정수지	△25.5	△33.6
통합재정수지	13.5	6.8
국가채무	527.0	570.1

o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투자수출 촉진, 지영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R&D 및 미래 대비 투 역점

- 특히 SOC 투자 확충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공약을 본격 추진

- 2015년 SOC 투자규모를 23.7조원 → 24.4조원으로 확대

o 안전 만들기와 희망 나누기 차원에서 안전투자 확대 및 안전산업 육성, 방위능력 학보,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 소상공인 지원확대, 비정규직 고용안정 지원, 기초연금 및 반값등록금 등 복지공약 완성 등을 중점 지원

3.「2014년 세법개정안」주요 내용

□ 세법개정의 방향

o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며,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 추진

- 경제활성화 :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벤처 지원
- 민생안정 :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 보장, 주거안정, 안전·복지 강화
- 공평과세 : 비과세 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 세제합리화 :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협력비용 감축

□ 주요 개정내용

o「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o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o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 후, 분리과세

o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o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o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o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 2년 연장

o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o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납입한도를 5천만원으로 확대

o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o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o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역세탈세 제재 강화

o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축소

4.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및 2015년 경제전망

1)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

□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소위 '고용 없는 성장'에 이어 '임금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o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1~2020년의 기간에 연평균 3.8%에서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하락 전망
- o 내수기반이 취약한 수출주도형 경제로 인해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매우 크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
- o 부가가치 생산액 10억원 당 취업자수는 1970년 156명에서 2012년 22명으로 꾸준히 하락
- o 2007~2012년 사이에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2.3%의 성장을 기록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는 내수기반을 침식

- o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저임금계층 비중(중위임금 2/3 미만 2011년 25.1%)과 3번째로 높은 임금불평등도
- o 실질임금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가계소득을 위축시키는 반면, 증가된 기업소득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여 내수위축, 고용 정체, 자영업 침체, 근로소득 감소,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
- o 저소득층의 취약한 자산구조와 높은 자산불평등도, 10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가구의 소비여력 미약
- o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 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취약한 산업연관관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양극화와 불평등구조 확대

<그림 1> 노동소득분배율·가계소득 비중·내수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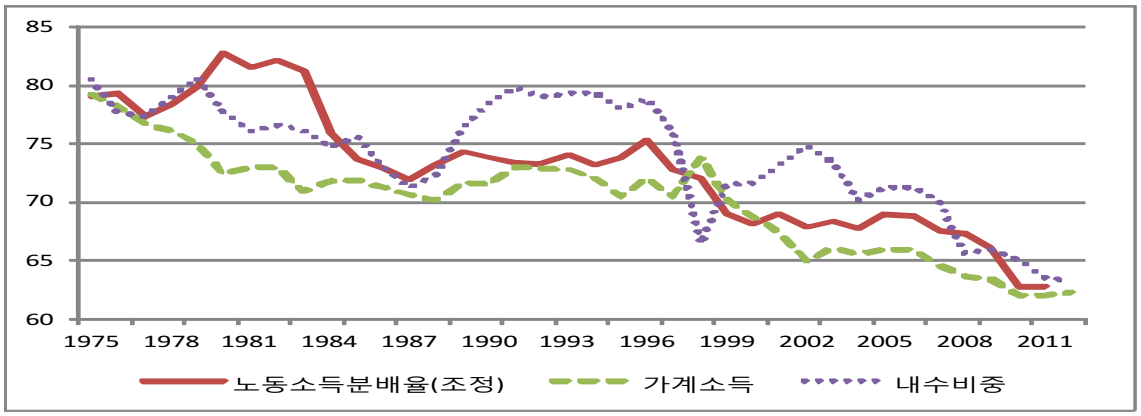

주: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만큼을 자영업자의 임금소득으로 귀속시켜 산출. 내수비중은 국민계정의 소비·투자·수출의 합에서 소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이병희(2013)

<그림 2> 임금 및 가구소득 불평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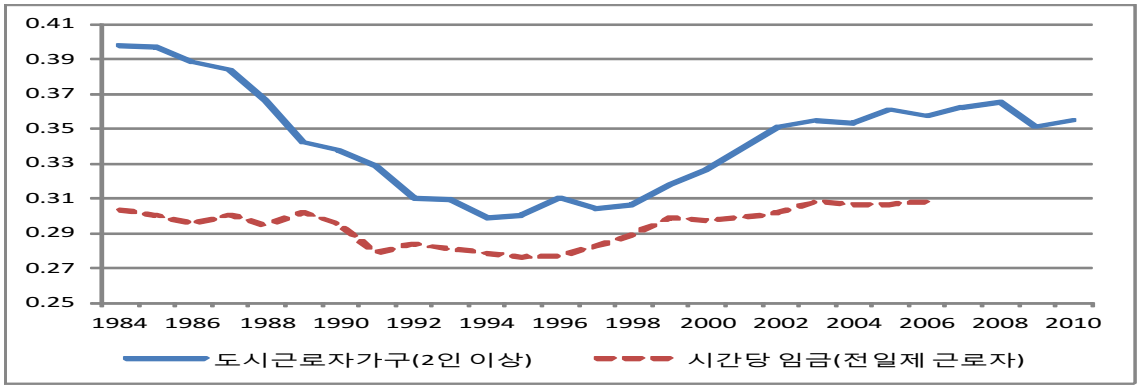

주: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는 경성소득으로 측정
자료: Cheon, et al.(2012); Kang and Yun(2008)

<표 5> 상위 1% 및 상위 10% 계층의 소득집중도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근로소득	상위1%	6.1	6.1	6.1	6.4	6.5	6.4
	상위10%	25.9	26.0	26.5	27.5	27.9	27.8
종합소득	상위1%	23.7	23.8	22.9	23.8	24.5	22.9
	상위10%	57.1	57.6	56.1	57.1	58.1	55.4
통합소득	상위1%	9.9	9.9	9.9	10.3	10.6	10.3
	상위10%	32.3	32.7	32.9	33.8	34.3	34.0

주: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수치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이이고, 통합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소득임.
자료: 홍종학 의원실(2014)

<표 6>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점유 비중(2012년) (단위: 조원, %)

	총금액	상위 1%	상위 10%
종합소득	126.0	22.9	55.4
금융소득	10.6	29.7	60.2
배당소득	7.5	35.7	70.3
이자소득	3.1	21.2	50.1
사업소득	75.0	20.6	55.0
근로소득	39.0	16.2	43.9
근로소득	422.4	6.4	27.8
통합소득	513.5	10.3	34.0

주: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수치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이이고, 통합소득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소득임.
자료: 전순옥 의원실(2014), 홍종학 의원실(2014)

<표 7> 재벌 대기업의 매출액 비중 (단위: GDP 대비 %)

	2002년	2007년	2012년
4대 재벌집단	37.3	34.6	54.0
상위1% 기업	54.8	55.3	58.8

주: 4대 재벌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중이고, 상위 1% 기업의 경우는 제조업 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이혼율, 가장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율, 낮은 행복지수,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 최하위 수준

<표 8> 복지국가유형별 경제성과 비교 (단위: USD 달러 PPP, %)

	지니계수			출산율	자살률	행복지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감소비율			
스칸디나비아형	0.443	0.258	41.8	1.92	12.48	54.4
앵글로색슨형	0.497	0.337	31.7	1.95	10.70	54.2
서유럽형	0.476	0.281	40.7	1.70	13.60	51.4
남유럽형	0.514	0.335	34.9	1.42	6.13	40.9
(한국)	0.341	0.310	9.1	1.23	33.50	45.4
OECD 평균	0.470	0.307	34.4	1.74	12.70	47.0

자료: www.oecd.org/statistics

2)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

□ 2015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o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이 점차 높아져 2015~2017년 중 국내경제는 연평균 3.8% 성장하여 2014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표 9>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성장률	3.0	3.6	3.8	3.9	3.7
경상성장률	3.7	5.4	6.2	6.4	6.0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년 수정 경제전망」. 2014.7.

o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5월 2014년과 201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7%와 3.8%로 전망

o OECD는 지난 5월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14~2015년 4%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o 무디스는 지난 5월 'Global Macro Outlook 2014-2015'에서 2015년에 세계교역 증가로 대부분의 국가가 내수를 회복함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도 가속화되고, G20 기준 성장률은 추세선인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한국의 성장률은 2015년에 3.0~4.0%의 구간에 있을 것으로 전망

o IMF는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과 마찬가지로 4.0%로 예상

o 국내외 경제기관의 전망에 기초할 때, 2015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수출세도 회복되고, 경제성장률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5.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

① 저부담·저복지 국가

-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이 모두 작아 '저부담 저복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최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율과 공기업 채무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음

<표 10> OECD 국가의 주요 재정지표(2011년) (단위: GDP 대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일반정부 총지출	공공사회 복지지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스칸디나비아형	36.2	44.5	52.1	27.4	50.5
앵글로색슨형	25.8	29.3	43.5	20.7	77.1
서유럽형	26.3	41.2	51.0	27.8	88.7
남유럽형	23.7	35.1	49.2	25.8	125.3
한국	19.8	25.9	30.2	9.1	36.2
OECD 평균	25.0	34.1	45.9	21.7	78.5

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표 11> 주요 국가의 조세수입갭과 재정지출갭 (단위: GDP 대비 %)

	조세수입갭	재정지출갭
한국	-3.4	-9.5
일본	-5.1	1.9
미국	-1.1	2.8
영국	-2.1	-1.6
스웨덴	3.7	0.7
덴마크	9.7	6.2
독일	-1.6	-2.0
프랑스	5.6	10.2
그리스	-2.5	-0.1
이탈리아	2.3	2.4

주: 2012년 기준. 조세수입갭(revenue gaps)과 재정지출갭(expenditure gaps)은 실제치에서 추정치를 뺀 것임.

출처: IMF(2013)

② 낮은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 2013년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41.8%로 OECD 회원국의 평균(43.6%)보다 낮음
- 2013년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일본(37%)과 미국(39.1%)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
- 무엇보다도 사회보장기여금 최고보험료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그 차이의 대부분은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험료율 차이에서 발생

<표 12> 주요 국가의 최고세율(2013년)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여금		
	최고세율	배수	합계	국세	지방세	표준세율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한국	41.8	8.6	24.2	22.0	2.2	10.0	18.2	8.1	10.1
일본	50.8	4.5	37.0	26.2	10.8	5.0	27.9	13.7	14.2
미국	46.3	8.5	39.1	32.8	6.3	-	19.3	5.6	13.7
영국	45.0	4.2	23.0	23.0	0.0	20.0	25.8	12.0	13.8
스웨덴	56.7	1.5	22.0	22.0	0.0	25.0	38.4	7.0	31.4
덴마크	60.4	1.2	25.0	25.0	0.0	25.0	8.0	8.0	0.0
독일	47.5	5.7	30.2	15.825	14.4	19.0	40.1	20.5	19.6
프랑스	54.5	15.1	34.4	34.4	0.0	19.6	55.3	13.7	41.6
그리스	46.0	5.5	26.0	26.0	0.0	23.0	45.1	16.5	28.6
이탈리아	48.6	10.1	27.5	27.5	0.0	21.0	42.6	10.5	32.1
OECD	43.4	4.8	25.3	22.8	8.5	18.9	26.8	9.9	16.9

자료: OECD, Tax Database.

③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한 과세기반 취약

- 소득탈루율이 높은 자영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조세감면조치가 도입되었고, 낮은 임금수준을 세제상 필요경비 공제를 통해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과세자 비율이 낮음
- 기업에게도 투자와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할 뿐 과세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
- 더욱이 간이과세제도와 면세제도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매출액을 누락시켜 과세투명성을 약화

<표 13>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잠정)
국세감면액	23.0	28.8	31.1	30.0	29.6	33.4(30.1)	33.6(30.0)
국세수입액	161.5	167.3	164.5	177.7	192.4	203.0	210.4
국세감면율	12.5	14.7	15.8	14.4	13.3	14.1(12.9)	13.8(12.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④ 개인과 법인의 낮은 세금부담

- <표 6>에서 보듯이 2012년 미화 10만 달러의 소득수준인 무자녀 독신자의 개인소득세 실효세율(17.1%)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
- 또한 근로자 및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이 낮음
- 그 결과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조세 및 사회보장세는 기업이윤의 27.9%로 34개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

<표 14>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개인소득세(2012년)			법인세(2012년)			
	개인 소득세	근로자 사회보장세	고용주 사회보장세	총조세 부담율	법인세율	사회보장세	기타
한국	17.1	5.4	6.3	27.9	14.2	13.4	0.3
일본	15.2	13.1	13.8	49.7	27.2	17.9	4.5
미국	18.7	7.3	7.7	46.3	27.9	9.9	8.4
영국	24.1	7.3	12.2	34.0	21.6	10.6	1.7
스웨덴	36.3	0.0	31.4	52.0	16.0	35.5	0.6
덴마크	42.1	0.2	0.4	27.0	20.3	3.6	3.1
독일	28.3	15.5	14.8	49.4	23.0	21.8	4.6
프랑스	20.0	22.0	41.0	64.7	8.7	51.7	4.3
그리스	30.0	16.5	28.6	44.0	11.2	32.0	0.7
이탈리아	35.6	9.6	17.0	65.8	20.3	43.4	2.0
OECD 평균	26.0	8.3	16.7	41.8	16.3	23.5	2.1

주 1)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은 개인소득이 USD 10만 달러인 무자녀 독신자를 기준으로 산출
2) 총조세부담율은 기업이윤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세 등의 비중
자료: KPMG(2012), IFC and The World Bank(2013)

⑤ 취약한 과세공평성

- 정부의 세제혜택 또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과세공평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
- 2011년에 개인소득의 경우 과세자 상위 10% 소득집단이 전체 소득공제액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소득세 공제감면액도 상위 1% 흑자 기업에 전체의 78.7%가 집중
- 2012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0%로 대기업 평균보다 낮고, 중소기업 평균 수준
-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된 세제혜택으로 인해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은 매우 낮은 상태
- 순개인소득세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체계의 누진성은 OECD 회원국 중 폴란드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
-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고소득층 및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은 더욱 약화

6. 2014년 세법개정의 방향 : 참여연대

□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넓은 세원 적정 세율”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o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법정 최고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위 소득계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이 낮음

o 더욱이 분배구조의 악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함에도 불구하고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함

o 따라서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여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함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산한 세수효과는 전년대비 기준 총 5,680억 원에 불과하며, 50% 이상은 2018년 이후 발생

o 먼저 새 경제팀의 경기확장 기조를 담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재정지출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

o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세수효과 2조 4,900억 원의 1/4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서 2015년에 국세수입으로만 약 11조 1천억 원을 충당·공약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

o 더욱이 8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에서 제시된 2015년도 사회보장 투자규모 60.3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

<표 15> 2014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단위: 억원)

	계	'15년	'16년	'17년	중간합계	'18년	'19년 이후
계	5,680	550	510	1,090	2,150	580	2,950
소득세	760	90	△170	430	350	400	10
법인세	3,060	△50	60	110	120	-	2,940
부가가치세	2,170	720	720	550	1,990	180	-
기타	△310	△210	△100	-		-	-

□ 더욱이 2017년까지 중간 합계를 산출해보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전년대비 기준 총 2,15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중 1,990억 원(92.6%)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차지

o 반면에 동 기간 내 법인세는 겨우 120억 원(5.6%) 증가에 불과. 법인세의 경우 전체 3,06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2019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

o 소득세 역시 76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처럼 서민·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고, 재산과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간접세인 소비세 위주의 세수증대에 주력함으로써 과세공평성과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경시

o 임대소득 과세는 과세기반 확충에 대단히 중요함에도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세 번에 걸쳐 후퇴하고, 그 과정에서 그 방향성과 명분을 상실.

- 임대소득의 경우 잠재적 과세대상자는 136만 5000명에 달하지만 신고자는 단 6%인 8만3000명에 불과하며, 신고된 수입은 1조 2963억 원으로 추정치인 44조 원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

o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제시한 3대 패키지 중,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이자소득과의 형평성이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o 가업상속을 위한 세제지원이나 최근 1억 교육비 면제법안처럼 부의 원활한 증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움직임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한다는 상속·증여세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보편적이면서 누진적인 세수확충 방안 필요

o 보편증세 시각에서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은 복지지출의 확충에 따라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수 있음

o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못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현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세부담이 집중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르지 못함

o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를 포함한 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노력이 필요함

o 복지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누진세제 방식의 세수확충 방안을 고민할 필요

1) '넓은 세원 적정 세율'에 적합한 법인세제 개편

□ 2011년 법인세 백분위별 공제감면 현황을 보면 상위 1%의 법인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

- o 비과세 감면정비와 함께 최고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 o 2015년에 예정된 법인세 주요 감면제도는 일몰처리하고 동시에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항목(외국납부세액 공제, R&D비용 세액공제 등) 폐지 필요
- o 이익집단의 개입이나 관행적인 감면제도의 연장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표 16> 법인세 공제· 감면 현황(2011년 신고 수입금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총감면액	R&D비용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타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상위 1%	73,440	15,959	24,412	6,220	173	14,913
	78.7%	69.0%	91.5%	95.0%	23.0%	93.4%
전체	93,315	23,113	26,690	6,547	752	15,960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3.10.

<표 17> 최저한세 적용 배제 주요감면항목 현황(2012년 기준) (단위 억원)

감면항목	중소기업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9,701	2,6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174	-
수도권밖 이전 공장·본사 기업 감면	317	1,976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	202	15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187	4,197

□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12%, 1천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6%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7% 적용

<표 18>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3년	개편안
100억원 이하	10%	10%
100-1000억원 이하	12%	15%
1000억원 초과	16%	20%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7%	7%

<표 19> 법인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07년 세율	2013년	개편안
2억원 이하	13%	10%	10%
2-100억원	25%	20%	22%
100-200억원	25%	20%	25%
200-1000억원	25%	22%	25%
1000억원 초과	25%	22%	27%

<표 20>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 억원)

과표구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안	2억 이하 10% 2억~500억 이하 22% 500억 초과 25%	39,061	42,772	46,345	49,951	54,236	132,365
2안	2억 이하 10% 2억~100억 이하 20% 100억~1천억 이하 22% 1천억원 초과 25%	27,915	58,118	63,742	69,629	76,063	295,467
3안	2억 이하 10% 2억~100억 이하 20% 100억~200억 이하 22% 200억~1천억 25% 1천억 초과 27%	50,790	105,600	115,538	125,921	137,252	535,102

주: 제1안은「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2012.9.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조세의 이해와 쟁점Ⅱ(법인세)』. 2014.7.

2) 소득세제의 과세공평성 강화

□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 5천만 원으로 낮춘 것은 세원 확충과 과세공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

o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42% 적용

<표 21> 소득세제 세율 조정 방안

현행		조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15%	1200만원 초과~4600만원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24%	4600만원 초과~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35%	88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1억 2000만원 초과	42%

3) 금융소득과세의 강화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 간 불공평한 세부담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며,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o 국책 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내증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한 현재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음.”

- 특히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킴

o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되는 큰 뭉치의 검은 차명거래와 이를 통한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근절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음

o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자와 금융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음

□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기존의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5% 단일세율을 적용

o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배당소득자(47,828명) 중 99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

o 통상적인 배당수익률 1%를 적용할 경우 세제혜택의 대부분은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귀속

o 따라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자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

o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할 경우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31% 정도임. 고액자산가의 경우 단일세율 25%를 적용받을 경우 6%p의 소득세 절감 효과

o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13년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

o 따라서 부자감세로 귀결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4)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비과세 철회

□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다주택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발생하고, 세제 혜택은 고소득자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60%로 적용하고,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o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2천만 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6.16%, 4백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경우, 3.08%에 불과
- o 저소득 임대소득자의 경우, 현행의 제도하에서도 1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2천만 원의 임대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 임대소득세는 61.6만원에 불과

□ 그러나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지만,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임대소득자의 경우 동일한 과세표준에 속하는 순수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음

- o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 원은 월세 월167만 원, 전세 14억 5천만 원에 해당
- o 고소득자의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을 분리과세 할 때와 종합과세할 때 적용세율의 차이로 인한 세금의 차이는 최대 2,000만원×(0.418-0.154×0.4)=713만원에 달함

□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임대시장 양성화임.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 소유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

가 있고, 이 과정에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견고히 유지해야만 전환 과정에서 세제혜택이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

- o 임대소득이 지하경제의 가장 큰 축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가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수평적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될 수 있음
- o 더욱이 임대소득이 일종의 불로소득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 공평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함

□ 개선방안

- o 임대주택자 의무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 o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여 근로소득과의 과세공평성을 제고해야 함
- o 타 소득과의 과세공평성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차원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 o 임대소득과세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이 문제라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되 영세 임대소득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감혜택을 적용할 수 있음

5)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철회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인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상속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임

- o 공제대상을 매출액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로 확대
- o 공제대상 가업 요건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 o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1인 지분 25% 이상 시에도 적용(기존 50%)

o 상속인의 가업 사전종사 기간 2년 이상 요건과 1인 단독상속 요건 폐지
o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각종 사후관리 의무 완화

□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상속 및 증여세의 재분배기능을 경시하기 어려움

o 1997년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음: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9)]

□ 부의 집중 실태

o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상위 1% 집단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8.6조원,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27.9조원으로 합계 36.5조원에 달하고 있음. 부가 상위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o <표 23>에서 보듯이 상위 1% 가구의 총자산액 평균은 43억 4,932만원으로 전체 총자산의 11.0%를 차지하고 있음
- 총자산의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는 각각 65배와 0.607을 기록하여 소득보다 더욱 큰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음
- 순자산을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는 각각 319배와 0.625로 증가하여 저소득계층의 자산구조가 매우 취약함

9)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표 23> 자산분배의 불평등지표(2012년) (단위: 만원, %)

		가구당 평균금액	구성비
총자산	상위 1%	434,932	11.0
	상위20%(a)	98,085	63.2
	하위20%(b)	1,498	0.9
	5분위 배율(a/b)	65배	
	지니계수	0.607	
순자산	상위 1%	380,030	11.3
	상위20%(a)	83,328	64.0
	하위20%(b)	261	0.2
	5분위 배율(a/b)	319배	
	지니계수	0.625	

주: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반대 이유

o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에 위배

o 가업의 영속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개인의 재산권과 회사 경영권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재산권과 경영권은 별개의 문제로 능력이 떨어지지만 창업 2세라는 이유로 경영에 나서는 행위는 기업경쟁력에 해가 될 수 있음

- 생산성의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면, 굳이 기족구성원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이유 없음

□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에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o 세액과 세율을 산출해보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높은 수준인지 의문

o 상속세의 경우 2012년 총 상속가액 26조 5374억 원 대비 결정세액은 1조 7659억 원으로 6.65%, 증여세의 경우 총 증여재산가액 24조 9060억 원에 결정세액은 3조 2348억 원으로 12.98%에 불과

o 중소기업의 경우엔 분명히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투자로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주식 현물 등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고

상속세 관련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

o 더욱이 가업승계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 장기간에 걸친 연부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풀어주면 됨

□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은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

o 탈루소득의 규모가 크고, 자본소득 또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이 적을 경우에 상속 및 증여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조세로서의 역할을 함

o 더욱이 법인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 가업승계세제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듦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9년부터 2007년의 기간에 평균 26.8%를 기록하여 34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
-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조차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질적인 총조세부담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임

o 재계가 주장하는 대로 많은 국가들이 기업경쟁력 재고를 위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하나, 한편으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금융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소득세의 누진성이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o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업승계의 확대가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근거도 찾기 어려움

6)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지배주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도 부합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30%를 정상거래의 명목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비율에서 공제하고, 3%의 한계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에서 빼주고 있음

- o 2013년 1월 1일「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을 통해 정상거래비율(30%)의 1/2인 15%로 공제비율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지만, 2014년 2월 21일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각각 50%와 10%로 상향 조정
- o 그 결과 세무상 실효세율과 실제의 실효세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재벌그룹 소속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22> 법인유형별 세무상 실효세율과 실제 실효세율의 차이 (단위: %)

구분	세무상 실효세율	실제 실효세율	차이
재벌	33.09	15.85	17.24
일반기업	20.02	10.58	9.44
중소기업	12.63	6.66	5.97
합계	21.80	11.49	10.31

출처: 채이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이슈&분석』2013-16호. 2013.

□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기본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그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또한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절대금액도 고려해야 함. 왜냐하면 기업들은 합병과 분할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해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임
- o 나아가 매출거래뿐만 아니라 매입거래를 통한 일감몰아받기와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행위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7)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 미흡

o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방정부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정부의 위기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o 지방세 감면총액은 2011년 기준으로 15조 1,612억원, 감면율 역시 22.5%로 대단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지방세수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8%씩 증가한데 반해 지방세 감면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9.9% 증가하였음.

o 이번 개편안에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방침을 담았으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며, 지난해 7월에 약속한 감면정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 주민세 인상에 대한 합리적 대안 필요

o 정부는 1999년 이후에 물가 상승폭이나 커진 경제 규모, 향상된 소득수준 등 달라진 시대상황에 비해 부과세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주민세 인상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움

o 주민세의 목적이 자치단체의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재산세와 통폐합하여 재산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

- 영국의 경우 1990년에 도입한 인두세 성격의 주민부담금(community charge)을 1993년 재산 가치를 고려한 council tax로 전환

o 또한 이번의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법인균등분의 인상폭은 미약하기 때문에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현실화해야 함

□ 담배세 인상이 국민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정책의 일부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공평과세의 원칙, 사회적 합의 선행의 원칙을 훼손

o 현재 한국의 15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37.6%으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담배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담배세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명분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방법에는 문제가 많음

o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담배세 인상부담의 대부분을 서민층이 부담. 정부가 조세저항이 극심한 직접세보다는 비교적 조세저항은 적으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는 의도

- 담배값 2000원 인상할 경우, 조세재정연구원 담배소비량 34% 감소 세수 2.8조원 vs. 국회예산정책처 20% 감소 세수 5조원 증대

o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겠다면 과세 공평성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함

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행정의 강화

□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o 더욱이 역외거래로 조성된 비자금은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주 매입에 지출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o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미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를 도입하여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미국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투자수익의 30%를 징수하도록 조치

o 조세도피처에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해 일종의 과세예비처분을 하고,

납세자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을 확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 o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기업이 탈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 경제적 실체인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
- o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금융계좌 보유사실이나 국제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
- o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을 낮추고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 o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차명금융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금융비밀주의로 인한 폐단을 제거

지정토론

김태일 교수 (좋은예산센터 소장)

MEMO

MEMO

MEMO

MEMO

자유토론

기재위 위원, 예결특위 위원 자유 토론

MEMO

MEMO

MEMO

MEMO